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495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9 월 18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춘천시주거실태조사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651007호 [2023.09.13.]
4. 통계작성의 목적 : 춘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
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
5. 통계작성의 대상
 - 대상 : 가구/개인
 - 모집단 : 조사시점 기준 춘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
 - 대상 범위 및 규모 :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
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,000가구
 - 대상지역 : 시군구
6. 통계작성의 주기 : 5년
7. 통계작성의 방법 : 조사통계/일반통계